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대책 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

1. 현재 상황

가. 최근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존중분위기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불만 호소가 급증

- 학생의 지시불이행, 질서문란,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한 호소 급증
- 일시적인 교육이수나 등교정지 등의 효과 없음.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퇴학이 불가능하므로 학생 징계의 효용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대안학교에 위탁 교육 거주지로부터 역시 멀리 떨어져 있어 취학이 어려움.
- 교사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은 사법적인 접근이 불가능¹⁾하여 학교 단위에서 해결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음.

나. 학부모와 민원 처리과정에서 분쟁 발생. 학교에서 학생 사고에 대한 수습과정에서의 분쟁.

- 비행학생의 부모가 학생 지도의 의지가 없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학교와의 소통 부족을 외부 인터넷이나 언론에 알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함.
-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사고에 대한 불만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원이 매우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음.

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음.

1) 교사가 학생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교사는 피해를 당할 뿐, 다른 대응방법이 없음. 최고의 징계가 등교정지 10일. 이후에 다시 학교에서 그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움. 더구나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서 당연히 교장이나 교육청에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
- 가해학생, 가해학부모를 피해 교사가 직접 대면하여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 과정에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

2. 해결방안 제안

가. 교권침해 및 교육불만 해소를 위한 긴급상담 체계²⁾ 마련

- 현재 일선 교원들의 불만을 수렴하고 해소하는 장치 불비. 불만의 내재화.
- 고충심사청구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립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사건발생 즉시 긴급상담을 통해서 부당한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개입하여 해결 모색하고 양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절차 이행

나. 학부모, 제3자 등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 마련

- 분쟁조정은
 - ① 분쟁을 경찰이나 언론 등 외부로 확산하기 보다는 교육계 내부에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 ② 분쟁당사자가 분쟁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고
 - ③ 학생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교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³⁾
 - ④ 분쟁이 원만하게 수습되지 아니하여 경찰이나 법원을 통한 사법적 절차로 가는 것을 방지⁴⁾

2)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와 같은 역할(민원실 + 상담실 + 감사실)

3) 학생 등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사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 호소하고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 학생에 의한 교사 성추행 사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 현재 학교단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학교장 등이 분쟁조정 의사 또는 능력이 부족.
- 시교육청 단위에서 분쟁조정기구 마련.

※ 교원노조, 학부모단체와 협력하여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교원, 학부모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교권 및 민원상담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마련. 양측에 대하여 조정.
- 학부모나 학생의 교권침해가 형사적 차원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결정⁵⁾.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송 등에 대하여 교원을 조력함.
- 교원의 비위나 과실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 수준이 징계를 해야 할 정도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징계 권고
-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으로 해당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교육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학교 재배정 권고.

다.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대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해결방안

- [문제학생]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
 - ① 교사의 지도 조언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학내에서 교육
 - ②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상담과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한 학생 -> 극빈층. 부모로부터 방치된 학생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③ 전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⁶⁾ : 전문의에 진단 의뢰 후 치료.

4) 사법적 해결은 비용, 시간이 들고, 양측 모두 피해해지게 됨. 사법적 결정으로 의견상 종료 이후에도 양측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김.

5) 현재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밟기 어려움. 따라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정신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층 진단을 하도록 하여 조기 발견하는 체제 구축 필요

라. 일반 학교에서 선도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과 분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선도 불능 학생이 있을 경우, 일반 학생에게 비행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음.
- 퇴학이 금지된 중학교의 경우, 별도의 교육기관 마련.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내에 지역을 분산하여 설치할 필요 있음. 거주지로부터 통학이 가능하도록.
- 자퇴 또는 유예된 학생의 복학⁷⁾ 시 적응교육 필요. (최소한 한달 이상)
- 교육장에 의한 학교재배정을 활용하여 문제학생의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동료 문제학생과 분리)

6)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2005년도 역학사업보고서 :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공동 조사연구」 결과, 서울 학생 불안장애 23.02%, 기분장애 1.95%,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 25.71% 등으로 나타남

7) 자퇴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유예된 학생이 복학하여 학교 분위기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사들의 통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음.